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1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7일
발 의 자 : 김기만 의원
찬 성 자 : 김광수(노원), 김동승, 김동욱, 김제리, 문상모, 박성숙, 박중화, 성백진, 우창윤, 이명희, 이석주, 최영수, 최조웅, 한명희, 황준환 의원 (15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발의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사업의 육성 ·지원에 따른 관광안내소 업무를 확대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으로 함.

나. 관광안내소의 업무를 신설함.

관광기념품 및 특산춤의 전시·판매 (안 제3조제5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안 제3조제6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안 제3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으로 한다.

제1조중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을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중 “시장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7호를 신설한다.
5. 관광기념품 및 특산춤의 전시·판매
6.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4조제1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의하여”를 “따라”으로 하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으로 하며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조례명: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
제2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제3조(직무) 안내소에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4.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제3조(직무) ----------. 1.~4. (현행과 같음) 5. 관광기념품 및 특산춤의 전시·판매 6.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안내소(안내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시설 관리 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소의 시설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 따른 ----------. ② ---------- 따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따른다.